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사업법」 제17조 개정으로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소요제기-선행연구-소요검증 등을 통합 수행하는 ‘통합소요기획’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26. 7. 1.)임. 이는 검토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기존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국방 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 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선행연구’ 수행시점이 ‘소요결정 과정’에 통합됨에 따라,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 등을 삭제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방위사업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6. 4. 3. ~ 4.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긴급소요에 대해서는 분석·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② (생략)	제20조(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분석·평가 중 소요결정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다.	③----- ----- ----- ----- ----- ----- ----- ----- --.
1.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평가는 소요의 타당성, 합리성 및 정책부합성 등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1. ----- ----- ----- ----- -----.
가. 합동참모의장은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가. ----- ----- ----- ----- -. <u>단, 긴급소요에 대해서는 분석·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u>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u><신설></u>	2. ~ 4.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u>
--	---